

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2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, 존속 기한 연장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

2. 주요내용

-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(2030. 12. 31.) 연장함.
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- 바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기간 : 2025. 9. 10. ~ 2025. 9. 30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문화체육관광국
입	관광과장	김민정
안	박물관팀장	문용아
자	담당자 (연락처)	안성애 (481-3034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<u>2025년 12월 31일</u> 로 한다.	제11조(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.